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서 울 고 등 법 원

춘천제1행정부

판 결

사 건 (춘천)2018누1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2. 26. 선고 2017구합50407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신축하여 스포츠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redacted]시 [redacted]동 1-1 외 19필지 지상 소재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8,798.09㎡의 건물을 이하에서는 '[redacted]센터'라고 하고, 위 건물 중 수영장, 스쿼시장, GX룸, 헬스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2,191.04㎡ 부분(공용면적 포함)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이라고 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1)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을 포함한 [redacted]센터의 설립 목적은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및 복리후생에 있다.

2)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이용 비율이 전체의 67%에 달하고, 사용료가 유사 스포츠센터의 사용료보다 저렴하며 실비변상 목적의 사용료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과세대상 부분을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제외한 일반인(이하 '일반인'이라 한다)에게 유료로 개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3) 다른 대학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만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수익사업 여부 판단기준의 구체화 및 해당 여부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선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학위의 취득, 교수 절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고 그러한 학교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등 참조). 어느 사업이 위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기준

[redacted]센터 중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 법리를 참고하여 ①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의 운영이 수익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이 교육 용도(수업시설 또는 훈련시설 등) 또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복리후생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③ [redacted]의 수익 중 일반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용료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및 그 수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④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거나 또는 일반인 사용료로 책정된 금액이 다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유사 체육시설의 사용료보다 현저히 저렴한지 여부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3)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앞에서 설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살펴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은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redacted]를 교육 및 학생 · 교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였고, 실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교육 및 복리후생 용도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redacted] 완공 2달 뒤인 2013. 9.경부터 바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하여 사용료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고, 일반인 대상 수익사업을 위한 관리 및 홍보 활동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이 사건 과세대상에 대한 운영시간 중 상당 부분을 일반인을 포함한 유료회원들의 사용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redacted]를 신축할 당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을 교육 및 학생 · 교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주로 사용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위 과세대상 부분을 일반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수익을 취하고 이로써 [redacted]의 관리 ·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지 비용을 충당할 목적을 갖고 있었고 그 수익 목적에 맞게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을 운영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②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유료 회원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학생·교직원들의 유료 사용도 모두 비과세의 예외 사유인 '수익사업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이 수익사업이 아닌 교육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려면, 위 과세대상 부분이 주로 학생·교직원들의 교육 또는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었고, 일반인이 위 과세대상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대학 시설을 그 용도에 맞게 이용하기 위하여 방문하게 되었다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대학 내 기타 시설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치는 수준이었다(원고가 예로 드는 대학 내 구내식당이나 매점, 카페 등의 일반인 사용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은 운영 초기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고, 원고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며 그 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이 학생·교직원들로부터 유료로 사용되는 것을 학생·교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 목적의 사용이라고 보더라도, 위 과세대상 부분이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개방된 형태·사용실태·이용비중·수익비율 등을 고려할 때, 위 과세대상 부분이 주로 학생·교직원들의 교육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위 일반인 개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조치라고 항변하나, 위 법에 따라 일반인에게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을 개방하였다고 하여 일반인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 사용을 교육사업 목적에 따른 사용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③ 제1심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의 유료 개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중 57.5%가 일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 내지 사용료로 인한 것이므로 수익의 비중이 적지 않고, 일반인 대상 수강료 내지 사용료가 유사 동종 체육시설의 그것보다 현저히 저렴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모두 [redacted]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출하며 별도의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일반인 대상 사용료가 실비변상 목적의 사용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을 수익사업으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위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순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아가 원고가 [redacted]의 24.9%에 불과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으로부터 얻는 수익으로 [redacted] 전체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과세대상 부분의 유료 개방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득을 보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원고는 [redacted]대학교나 원주 [redacted]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들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되어 있으나 해당 세무서로부터 재산세 등 비과세의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redacted]대학교나 원주[redacted]대학교에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재산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redacted]대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는 국가 소유인 관계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원주 [redacted]대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는 일반인에게 전면개방된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과정 스포츠강좌에 등록한 시민들에게만 개방되었으며 평생교육과정 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영에 따른 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redacted]대학교나 원주 [redacted]대학교에 대한 과세 처분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 처분과 동일한 조건에서 다르게 내려진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분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과세대상 부분이 일정 부분 학생·교직원들을 위한 교육 및 복리후생 증진 용도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 과세대상 부분은 수익사업에 사용되어 재산세 등 비과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복형

판사 지창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판사 류영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3

[별 지]

이 사건 처분 내역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액(원)
2015. 6. 11.	취득세(부동산)	144,323,070
	지방교육세	7,059,800
	농어촌특별세	8,824,760
	합계	**160,207,630**
2015. 6. 10.	재산세(건축물)	5,158,260
	지역자원시설세	1,579,750
	지방교육세	661,310
	합계	**7,399,320**
2015. 6. 10.	재산세(토지)	428,620
	지방교육세	50,430
	합계	**479,050**